

#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

김태훈 /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팀 과장

##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업체당 50억원 한도 지원

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를 발표하였다.

금번 지원안내에 따르면, 창업 및 진흥기금융자 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(또는 매출액의 125%) 한도로 지원하며 구조개선자금(시설), 중소·벤처 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을 배제한다. 단,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,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. 이같은 지원은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 공고할 방침이다.

### ◆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

1. 사업목적: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

2. 지원규모: 3,807억원

### 3. 지원대상 및 조건

#### 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

- 지원대상: 제조업(전업률 30%이상), 유통업, 건설업,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- 지원범위: 공장·부지매입비, 시설도입·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, 연구개발비 등

- 대출금리: 연6.41%

- 대출기간: 시설자금은 8년(거치기간 3년포함), 운전자금 3년(거치기간 1년포함)

- 대출한도: 시설자금(8억원), 운전자금(3억원)

#### ②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

- 지원대상: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(단체), 지방소기업종합지원센터, 지역특화품목생산 중소기업

- 지원범위: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, 디자인, 소재개발 전시·판매 등에 소요되는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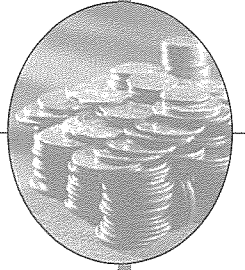
- 대출조건: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대출조건과 동일

#### ③ 시장재개발사업

- 지원대상: 시장을 재개발·재건축, 증·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사업, 중소궤화점,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·개축하는사업자

- 지원범위: 시장재개발·재건축자금 및 임시시장 설치자금

- 대출금리: 6.41%



- 대출기간: 재개발·재건축사업자금은 15년 이내(거치기간 5년포함), 임시시장설치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: 재개발·재건축사업자금 100억원, 임시시장설치자금 5억원

4. 신청 및 접수기관: 각 시·도 중소기업 지원담당과

◆ 수출금융 지원자금

1. 사업목적: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
2. 지원규모: 500억원
3. 지원대상: 수출계약 중소기업-중소기업청(수출지원센터)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지원
4. 지원범위: 15억원 한도내에서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지원(수출계약액의 90%이내)
5. 지원조건
  - 대출금리: 5.1%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준용)
  - 대출기간: 최장 180일 (선적일로부터 7~15일 이내)
  - 대출방식: 순수신용 혹은 순수 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(3:7)으로 지원,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어음 매입시 정산
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◆ 구조개선자금

1. 사업목적: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

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

2. 지원규모: 7,000억원
3. 지원대상: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및 복한 진출 중소기업
4. 지원범위
  -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·개체하거나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·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
  - 인수·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
5. 지원조건
  - 대출금리: 연 6.25%(변동금리)
  - 대출기간: 8년 이내 (거치기간 3년포함)
  - 대출한도: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총 20억원 이내(다만,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)
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◆ 중소·벤처창업 자금

1. 사업목적: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
2. 지원규모: 2,500억원
3. 지원대상:
  - 창업준비중인 자
 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4. 지원범위: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
5. 지원조건:

## 정책자금안내

- 대출금리: 연 6.2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시설자금 8년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  
(단,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
- 지원방법: 중진공(신용보증기관)의 신청·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직접대출 실시(부동산 등담보부 대출 포함)

### 6. 신청 및 접수기관: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담보부, 순수신용)
-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
(기술평가보증서부)
- 지역신용보증재단(소액 보증서부)

### ◆ 경영안정자금

1. 사업목적: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, 판매 및 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2. 지원규모: 2,400억원
3. 지원대상:
  - 일반경영안정자금: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(전업률 30%이상)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
  - 특별경영안정자금: 최종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·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기업, 화의·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등
4. 지원범위
  - 원부자재 구입, 경영·기술혁신, 기술도입 및 사업화,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- 재해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,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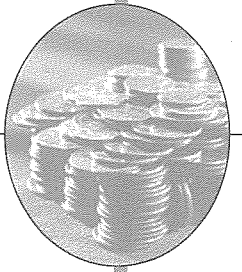
### 5.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 6.2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3년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- 대출한도: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  
(매출액에 따라 차등)
- 지원방법: 중진공 신청·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직접대출 실시(부동산 등담보부 대출 포함)

### 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### ◆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1. 사업목적: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
2. 지원규모: 500억원
3. 지원대상:
  -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중소기업: 기술혁신개발사업,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
  - 선정기술을 최근 1년 이내에 사업화 하려는 Inno-Biz 선정업체
  -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
  -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 등으로 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가



### 능한중소기업

#### ※ 지원제한

-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서 지정된 업체
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중인 업체
- 사업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

#### 4. 지원범위

-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, 추가개발비 등
-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

#### 5.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5.7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업체당 5억원  
(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)
- 대출방식: 순수 신용대출

#### 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#### ◆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

1. 사업목적: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 마련
2. 지원규모: 1,000억원
3. 지원대상:
  - 지식기반 서비스업(전업률 30% 이상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- 지원제한: 퇴폐향락업종 영위기업,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

#### 4. 지원범위: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

#### 5.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6.2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동일 기업당 10억원 한도  
(단,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이내)

#### 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#### ◆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1. 사업목적: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
2. 지원규모: 2,500억원
3. 지원대상:
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: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
  -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: 상시종업원 5인 이하 업체

- ※ 지원제외 대상: 금융,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

#### 4. 지원범위: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#### 5. 지원조건:

- 대출금리: 연6.25%(변동금리)
- 대출한도: 5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
## 정책자금안내

- 상환방식: 1년 거치후 4년간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균등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
- 대출취급은행: 국민, 기업, 하나, 한미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은행, 농협
- 6. 신청 및 접수기관: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(해당 중소기업청에 문의)

### ◆협동화 사업자금

1. 사업목적: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사시설, 공해 방지시설,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등을 지원
2. 지원규모: 1,800억원
3. 지원대상
  -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유통산업 관련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(벤처기업의 겨우 영위업종미 적용,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/2범위 이내, 금융기관불량거리처로 규제중인 자, 휴·폐업증인자,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)는 제외)
4. 지원범위
  - 시설자금: 건물·부지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(추진주체는 50억 원이내, 참가업체는 40억 원 이내)
  - 운전자금: 사업장준공이후 정상가동소요자금(추진주체는 10억 원 이내, 참가업체는 5억 원 이내)

- 협업화 자금: 판로개척, 원자재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 소요자금(추진주체는 30억 원이내, 참가업체는 20억 원이내)

### 5.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 6.2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시설자금은 10년(거치기간 5년),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은 5년(거치기간 2년)
- 6. 신청 및 접수기관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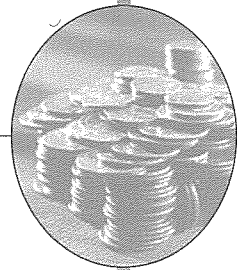
### ◆문의및 신청·접수기관 연락처

□ 정책자금안내시스템(www.finainfo.go.kr)

- 300종에 달하는 국내정책자금 관리 및 검색 시스템

□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

지방중기청	전화번호
서울	02-509-7012
인천	032-450-1114
부산·울산	015-601-5120
강원	033-258-3516
대구·경북	053-659-2221
충북	043-230-5333
광주·전남	062-360-9141
전북	063-210-6411
경기	031-290-6990
경남	055-268-2551
대전·충남	042-481-4379
제주	064-723-2101



□ 중소기업진흥공단 (www.sbc.or.kr)

지역본부	전화번호
서울	02-769-6601 ~ 8
대전·충남	042-866-0114
경남	055-269-5840 ~ 4
부산	051-630-7430 ~ 6
경기	031-259-7900
울산	052-277-3283 ~ 6
대구·경북	053-601-5261 ~ 9
경기북부	031-878-0747 ~ 9
강원	033-256-9611 ~ 3
인천	032-450-0520 ~ 6
충북	043-230-6800
강릉	033-646-9967 ~ 8
광주·전남	062-600-3000
전북	063-213-2130
제주	064-751-2055 ~ 7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

지역	전화번호
서울	02-563-0671 ~ 3
경기(수원)	031-259-7700
부산	051-831-1183 ~ 7
강원(춘천)	033-251-1353 ~ 5
대구	053-554-5300
경남(창원)	055-263-2262 ~ 4
인천	032-822-2161 ~ 3
경북(구미)	054-474-7100
광주	062-950-0011
전남(순천)	061-743-0365
대전	042-864-1701 ~ 6
충남(아산)	041-541-9831 ~ 3
울산	052-227-7462 ~ 5
충북(청주)	043-236-2691

□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

지역	전화번호
서울	02-789-9297
광주	062-361-0630
강남	02-567-6800
대전	042-483-2993
부산	051-465-2301
경기	031-215-1560
대구	053-424-6970
기술평가사업본부	02-789-9308
인천	032-438-9080